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 절차



-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희망자, 취·창업 및 이.전직을 위해 훈련상담 필요
시 훈련상담 실시 후 수강신청가능
- ②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수강시 HRD-NET을 통해 수강 가능
- ③ 훈련상담 : 과제수행 → 자기탐색활동 및 과제내역
- ★훈련상담-훈련계획미실시 및 방문일자 미방문자에 대해 해당 훈련과정 수강신청불가
- (방문일자: 시간:)
- ★변경사항발생시 유선통보필수 ☎ 055-379-2471, 055-379-2491
- ④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방문) 및 자비부담금 익일부터 결제가능(일반직종)
- ⑤ 훈련수로 및 취업, 창업

※ 자기탐색활동 및 과제내역

구 분	과제 부여방법(예시)
1. 자기탐색 (선택 1개)	① 직업심리검사 : 성격, 흥미, 생활사를 알아보는 직업선호도검사(한 형, 60분), 직업능력을 측정하는 직업적성검사(90분) 실시 및 상담 후 결과표 등을 제출 ⇒ 워크넷 (www.work.go.kr) 직업정보 상리검사 ② 단기취업동향 등 (재)취업지원포털 : 구직기술·대인관계능력 의사결정 능력 향상 등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단기취업특강 또는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이나 변화된 모습 등을 기술하여 제출 ⇒ 전화에약 가능 ⇒ ①, ② 중 1개 이상 수행 후 자기탐색결과표 작성
2. 희망직업정보탐색·취업계획(2-1) 및 일자리정보 검색(2-2)	① 희망직업정보 탐색 : 희망직업에 대하여 워크넷을 활용, 하는일, 임금/직업만족도/전망, 능력/지식/환경, 성격/흥미/치러관 등을 검색 하고 그 결과를 작성 ② 취업목표 : 희망 직업으로의 취업전략, 취업예정기간, 취업예정일 등 작성 ③ 일자리 정보 검색 : 워크넷을 활용, 희망근무지를 중심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직업정보 탐색·취업계획서(2-1) 및 일자리정보검색결과표(2-2) 작성
3. 적합훈련과정 탐색	① 자기탐색 결과 및 수집한 직업정보를 토대로 직무적합성, 필요한 해임역량 보유 정도를 확인한 후 부족한 해임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 카드발급 결정 시 판단 기준

- ① 2주간 실시하는 자기탐색활동 또는 취업상담(지원)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 ② 취업의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작성내용 및 증빙서류 미비, 구직활동 등을 통한 취업의사, 훈련계획의 구체성, 훈련참여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성, 수료 후 취(창)업계획 등 확인)
- ③ 환경적으로 성실한 훈련참여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훈련 후 관련 취업가능성 미약)
- ④ 취미·오락·봉사·여가활동 등의 성격으로 훈련참여를 희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신규졸업 후 동일 수준의 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희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개좌발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제한

훈련의 목적 및 필요성, 구체적인 취업/창업계획 등 확인, 훈련 필요성이 높고 취업/창업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이 결정됩니다.
※ 계좌발급 쿼터(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계좌발급이 가능하며 월별 계좌
발급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좌발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정보 검색 및 우수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한 후 작성

적합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훈련 과정명 (취업을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명과 이유를 기재)			
우수 훈련기관명 (소재지 및 연락처)		훈련기관 방문일	
훈련기간 (훈련일수/시간)		20 . . . ~ 20 . . . (일/ 시간)	훈련비 (수강료) 원
훈련과정의 주요 내용 및 참여시 장·단점		1. 훈련과정의 주요 내용 2. 참여 시 장·단점	
훈련성과 (취업률, 수강평 결과 등) ※HRD-net 검색			
수료 후 관련 직업	직업명		
	요구되는 특성 (능력, 지식, 성격, 학력 등)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시행기관)		
	자격증 개요		
	시험과목, 시험일 등 취득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인훈련계획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상담원과 합의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해당되는 곳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방법	훈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합니다.
 -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또는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소득 및 매출액)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뒤쪽)

-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참여가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2. 훈련생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1. 소정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3.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4.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5.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 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훈련개시일 까지

<기타안내>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 3,000원이 부과됩니다.

2. 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HN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체크는 훈련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취득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프로파일링

희망훈련지역	
성별	☐ 남 ☐ 여
연령대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학력	☐ 중학교이하 ☐ 고등학교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이상
소득수준	☐ 중하이하(월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해당없음) ☐ 중(월 소득 101만원~200만원) ☐ 중 이상(월 소득 201만원 이상)
경제 활동상태	☐ 취업경험 × 현재취업 × ☐ 취업경험 × 현재취업 ○ ☐ 취업경험 ○ 현재취업 × ☐ 취업경험 ○ 현재취업 ○
대표적인 훈련목적	☐ 취업·이직을 하기 위해서 ☐ 창업을 하기 위해서 ☐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 배워서 언젠가 활용하려고 ☐ 회사에서 직무역량 높이려고 ☐ 전직을 위해

역량진단

위에서 선택한(희망훈련분야)의 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로 희망하십니까?		
☐ 아주 조금 희망함	☐ 어느 정도 희망함	☐ 대단히 많이 희망함
☐ 조금 희망함	☐ 많이 희망함	
(희망훈련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입문자 또는 1년미만	☐ 초중급 관리자 또는 7년 이상 10년 미만	
☐ 초급 실무자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 관리자 또는 10년 이상	
☐ 중급 실무자 또는 4년 이상 6년 미만		
최근 5년 이내, (희망훈련분야)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 입문수준(1년 미만 경력)	☐ 전문가 수준(7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 초급수준(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 최고 전문가 수준(10년 이상 경력)	
☐ 중급수준(4년 이상 6년 미만 경력)		
(희망훈련분야)의 훈련에 참여할 경우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희망훈련분야)의 훈련에 참여할 경우,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육체적 실습 어려움 있음(하루 1시간 이내 참여 가능)		
☐ 실습 시 다소 주의 필요(하루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참여가능)		
☐ 무리하지 않으면 훈련 참여가능(하루 3시간 이상 ~ 5시간 이내 참여가능)		
☐ 훈련참여 지장 없는 건강상태(하루 5시간 이상 ~ 8시간 이내 참여가능)		
☐ 훈련 참여 전혀 지장 없음(하루 8시간 이상 참여가능)		